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공보관 인권보호관 강범구
전화 031-820-4460/팩스 031-820-4555

보도자료
2023. 8. 11.(금)

제 목 현대오일뱅크 경영진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 ① '19. 10.경부터 '21. 11.경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폐놀 및 폐놀류 일부 함유) 합계 3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 ② '17. 6.경부터 '22. 10.경까지 위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하고,
- ③ '16. 10.경부터 '21. 11.경까지 위 폐수 합계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사실을 밝혀내어
- 위 범행에 가담한 현대오일뱅크 전(前)대표이사 등 7명 및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23. 8. 11.(금) 기소함

※ 각 회사는 '23. 3.경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에이치디현대오씨아이, 에이치디 현대케미칼로 각각 사명 변경됨

-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총 8명)

- A○○(남, 64세), 현대오일뱅크 전(前) 대표이사(부회장)
- B○○(남, 61세), 현대오일뱅크 전(前)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
- C○○(남, 58세), 현대오일뱅크 신사업건설본부장(부사장)
- D○○(남, 53세), 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부사장)
- E○○(남, 51세), 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부장)
- F○○(남, 59세), 현대오씨아이 전(前) 대표이사(전무)
- G○○(남, 54세), 현대오씨아이 대표이사(전무)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② 공소사실 요지

【현대오씨아이로 폐수 불법 배출】

- (A○○, B○○, D○○, E○○, F○○, G○○의 공동범행) '19. 10. 24.경부터 '21. 11. 5.경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폐놀 및 폐놀류가 함유된 폐수 합계 3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

【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불법 배출】

- (A○○, B○○의 공동범행) '17. 6. 8.경부터 '22. 10. 31.경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폐놀 및 폐놀류가 함유된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

※ 냉각수로 투입한 353만 톤 중 약 36%인 130만 톤의 폐수가 수증기 형태로 대기 증발, 범행 기간 동안 증발한 폐수의 객관적인 폐놀 함유량은 측정값이 없어서 불특정

【현대케미칼로 폐수 불법 배출】

- (C○○의 범행) '16. 10. 19.경부터 '21. 11. 11.경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폐놀 및 폐놀류가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폐수 합계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

2

주요 수사 경과

- '21. 8. 18. 권익위에 공익제보
- '22. 8. 30. 환경부, 의정부지검에 사건 송치
- '22. 10.~11. 의정부지검, 현대오일뱅크 서울지사 및 대산공장 등 압수수색
- '22. 12.~'23. 8. 관련자 조사, 대검·유관기관에서 관련 실험 등 진행
 - ※ AOO(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DOO(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 FOO(현대오씨아이 전 대표이사), GOO(현대오씨아이 대표이사) 등 4명 추가 인지
- '23. 8. 11. 불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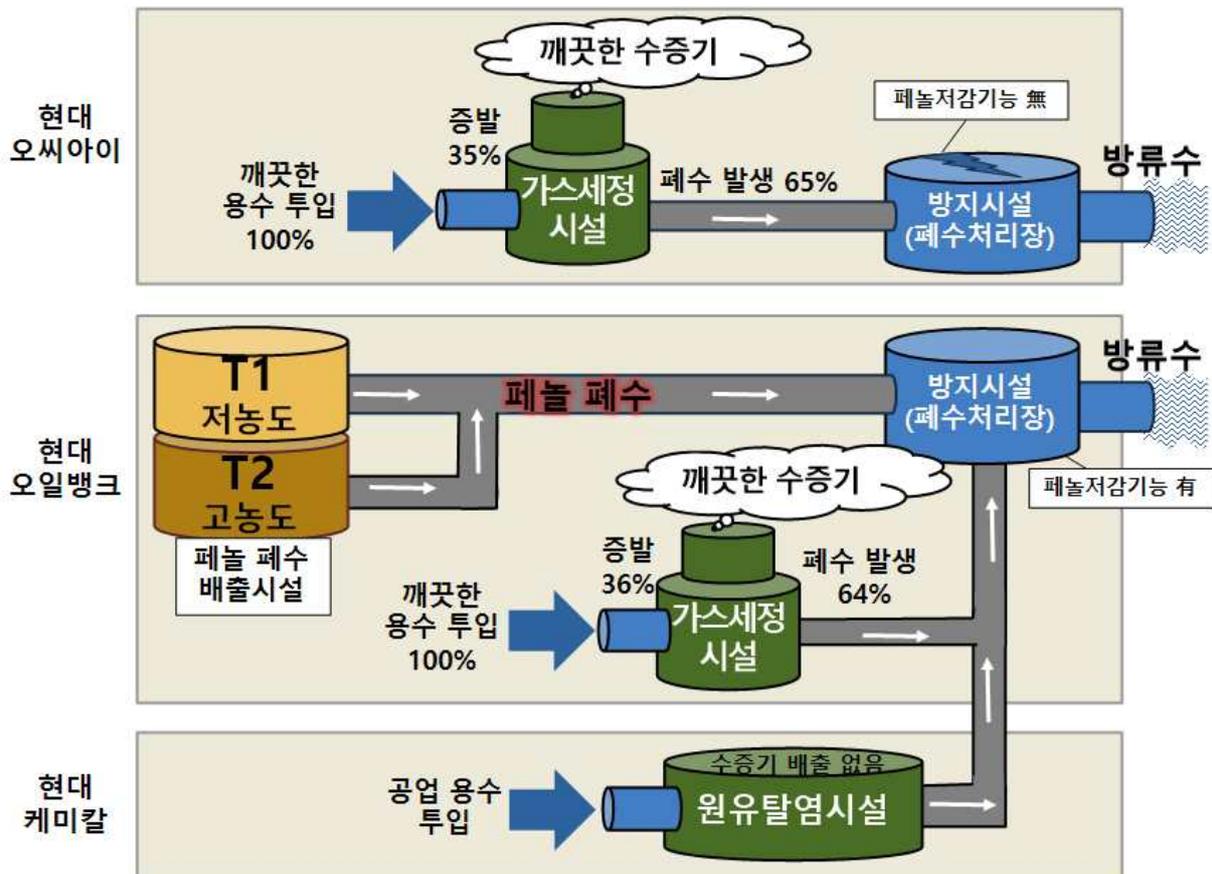
3

폐수 불법 배출 구조와 방식

● 최초 허가된 정상적인 폐수 배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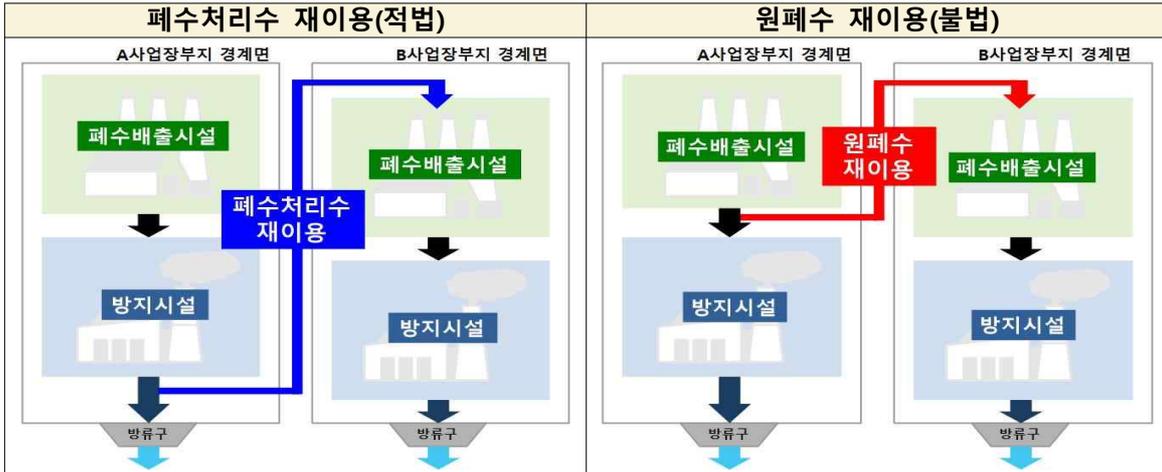
- 현대오일뱅크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mg/L, 페놀류 최대 38mg/L가 함유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로,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처리 후 배출 필요

*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1mg/L, 페놀류 3m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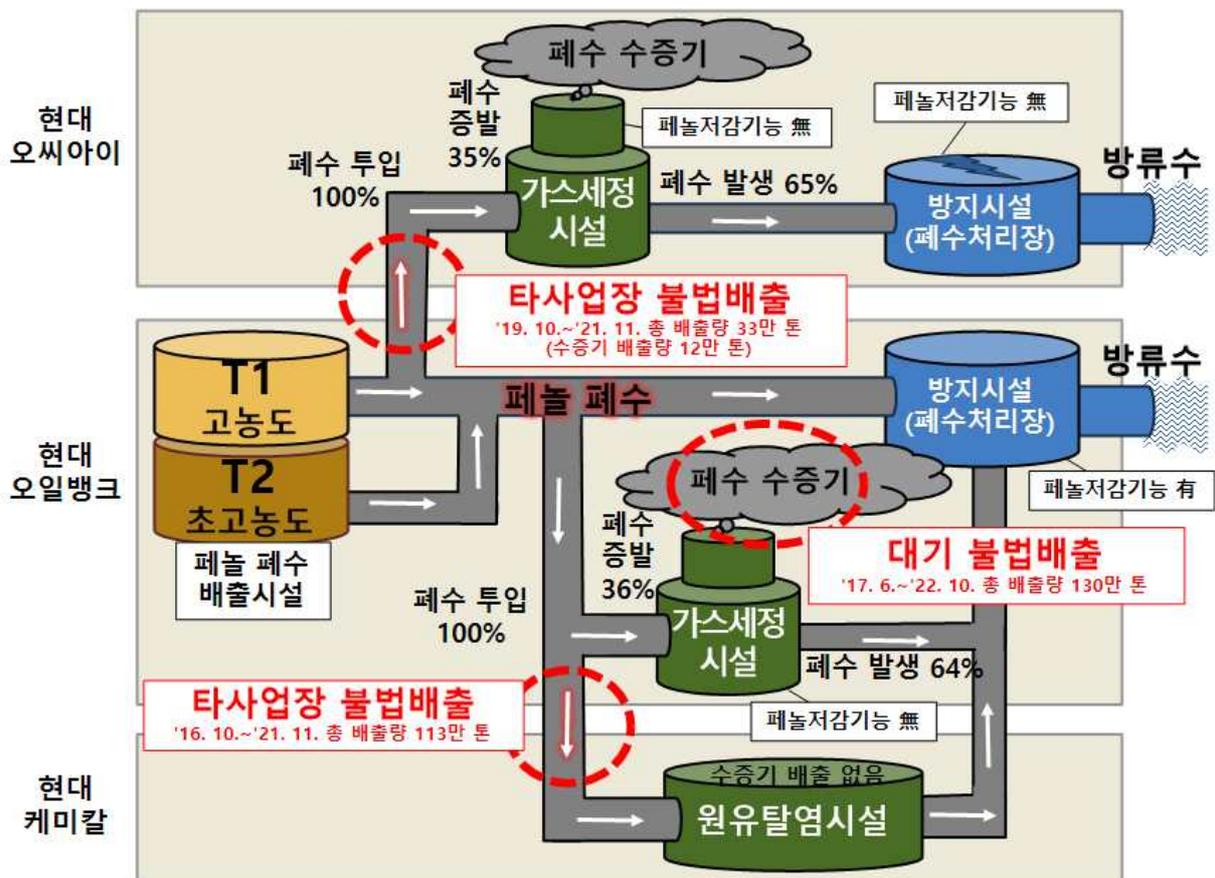


●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한 폐수 불법 배출

-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 배출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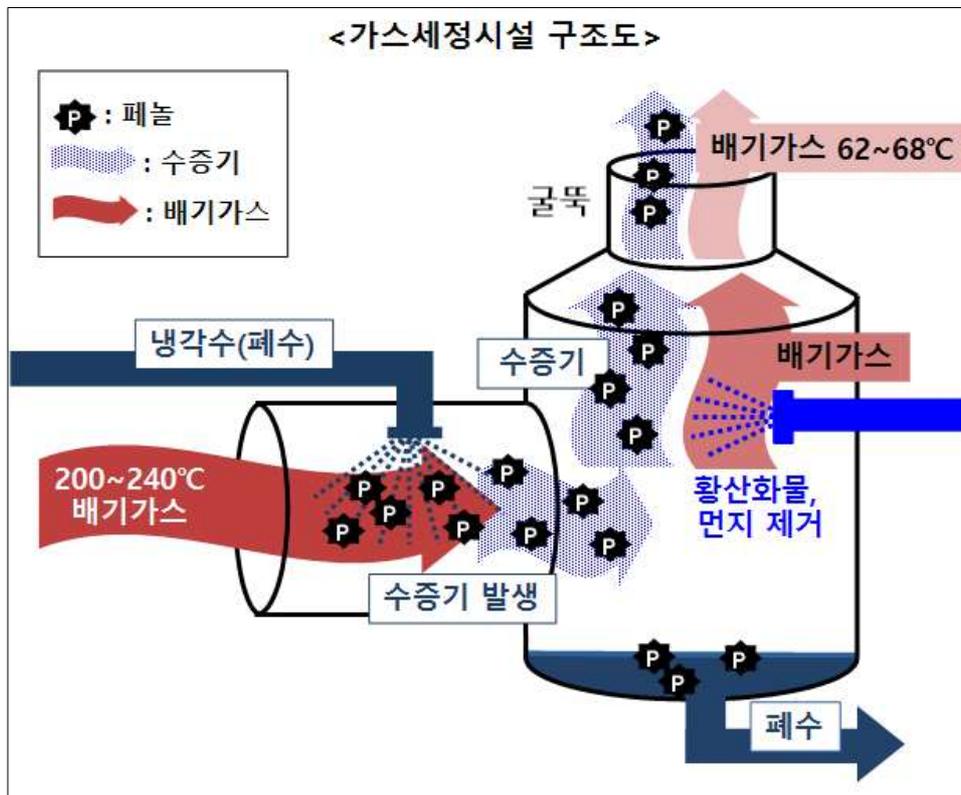


-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아 폐놀 등 성분이 함유된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하여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등으로 불법 배출하거나 현대오일뱅크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하여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



● 페놀 폐수 대기 증발 결과 초래

- 현대오일뱅크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 약 353만 톤 중 36%인 약 130만 톤이 대기로 증발
- 화학실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범행 기간 동안 현대오일뱅크의 가스세정시설 굴뚝에서 폐수 증발시 페놀 성분도 함께 증발되는 사실 확인
- ※ 범행 기간 동안 증발한 폐수의 객관적인 페놀 함유량은 배출당시의 측정값이 없어서 불특정



- 가스세정시설(오염된 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용도)에 페놀 함유 폐수를 투입한 후, 약 200~240°C 고온의 배기가스에 위 폐수를 분사하여 가스를 냉각시키는 용도로 사용
- 위 과정에서 투입한 폐수량의 약 35~36%가 수증기로 증발되어 배기가스와 섞인 상태로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

4

수사의 의의

①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450억 원) 등 절감 목적 범행 확인

- 폐수 총량 감소로 인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450억 원) 및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연 2~3억 원)을 위하여 폐수 불법 배출 감행 사실 확인
-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대표이사까지 관여된 범행임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을 추가로 입건하여 기소

② 범행 은폐 및 규제 회피 정황 확인하여 엄단

- 공무원 현장 점검,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 발생시 일시적으로 폐수 차단 후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 확인
- 폐놀 및 폐놀류의 양을 실질적으로 저감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배기 가스와 섞어 농도를 낮춰 희석 배출시킨 사실을 밝혀냄

③ 관련 실험 등 과학 수사를 통한 검증 진행

- 대검 DNA·화학분석과 및 다수의 유관 기관을 통한 수차례의 관련 화학실험으로 검증한 결과, 폐수 증발시 폐놀 성분도 수증기와 함께 증발되는 사실 명확히 확인
- 환경범죄 자문위원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폐수 속 폐놀 성분 증발의 과학적 근거 확인

④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공조 수사

- '22. 11. 14.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후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사례
- 검찰은 압수수색, 전문가 자문, 관련자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 진행하고, 환경부는 특사경 수사 인력 지원, 소속·산하 관련 기관과의 소통·협조, 자료 공유 등으로 효율적 공조 수사

5

향후 계획

-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환경침해 범죄 엄단**

-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복잡·다양하고 고도로 지능화된 각종 환경침해 범죄를 철저히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